안전관리

2018. 03. 00

CONTENTS

- I 안전과 생산
- Ⅲ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운용
- Ⅲ 원소 분석과 화합물의 조성
- IV 예상 문제

안전보건관리조직의 형태별 종류

직계식(Line)	경영자의 지휘와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의 계통이 되어 신속히 전달되며 10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적합 한 유형이다.
참모식(Staff)	안전업무를 관장하는 전문부분인 스태프(staff)가 안전관리 계획안을 작성하고, 실시계획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100~1,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규모 사업장에 주로 적용된다.
직계·참모식(Line·Staff)	안전계획, 평가 및 조사는 스태프에서, 생산기술의 안전 대책은 라인에서 실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1,000 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된다.

산업안전보건위원회

• 개요

-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한다.
-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, 명예감독관,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한다.
- 사용자위원은 대표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산업보건의, 상시근로 자 50인 이상 100명 이하일 경우 대표자가 지정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.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- ❖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수 있다.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 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산업안전보건위원회

- 심의 · 의결 사항
 -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근로자의 안전 ·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 -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-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 -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- 회의록 작성사항
 - 개최 일시 및 장소
 - 출석위원
 - 심의 내용 및 의결 · 결정 사항
 - 그 밖의 토의사항

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

-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.
 - 단,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, 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
-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
 - 토사석 광업
 -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 제외)
 -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
 - ❖ 의약품, 의료용 화합물,생약 제제 제조업, 비누, 세정광택제, 화장품 제조 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
 -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 - 제1차 금속산업
 -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(기계 및 가구 제외)
 -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 -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(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외)
 -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(전투용 차량 제조업 제외)

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

-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.
 - 농업
 - 어업
 -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 -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 - 정보서비스업
 - 금융 및 보험업
 - 임대업 (부동산 제외)
 -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연구개발업은 제외)
 - 사회지원 서비스업
 - 사회복지 서비스업

-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,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
 - 토사석 광업
 - 식료품 제조업, 음료 제조업
 -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(가구 제외)
 -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
 -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
 -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(의약품 제외)
 -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 -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 -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 - 1차 금속 제조업
 -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(기계 및 가구 제외)
 -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 -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

-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,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
 - 전기장비 제조업
 -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
 -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 -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 - 가구 제조업
 - 기타 제품 제조업
 -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
 - 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
 - 자동차 종합 수리업, 자동차 전문 수리업
 - 발전업

- 상시근로자 1,000명 이상 2명,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,000명 미만 1명 (단, 부동산업과 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 1,000명 미만)
 - 농업, 임업 및 어업
 - 기타 제조업
 -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(발전업은 제외)
 -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
 - 운수 및 창고업
 - 도매 및 소매업
 - 숙박 및 음식점업
 - 영상 ·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
 - 방송업
 - 우편 및 통신업
 - 부동산업
 - 임대업 (부동산 제외)

- 상시근로자 1,000명 이상 2명,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,000명 미만 1명 (단, 부동산업과 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 1,000명 미만)
 - 연구개발업
 - 사진처리업
 -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
 -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
 - 보건업
 -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
 -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
 - 기타 개인 서비스업
 - 공공행정
 - ❖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 -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·중등·고등 교육기관, 특수학교·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
 - ❖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
• 건설업

- 공사금액 50억원 이상(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) 120억원 미만 (토 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) : 1명
-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(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) 800억 원 미만 : 1명
-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,500억원 미만 : 2명
- 공사금액 1,500억원 이상 2,200억원 미만 : 3명
- 공사금액 2,200억원 이상 3,000억원 미만 : 4명
- 공사금액 3,000억원 이상 3,900억원 미만 : 5명
- 공사금액 3,900억원 이상 4,900억원 미만 : 6명
- 공사금액 4,900억원 이상 6,000억원 미만 : 7명
- 공사금액 6,000억원 이상 7,200억원 미만 : 8명
- 공사금액 7,200억원 이상 8,500억원 미만 : 9명
- 공사금액 8,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: 10명
- 1조원 이상 : 11명

안전관리자

- 안전관리자의 직무
 -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직무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 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
 - 안전인증대상 기계 · 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· 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· 지도
 -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
 -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·
 지도
 - 사업장 순회점검 · 지도 및 조치의 건의
 -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·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·지도
 -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·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 -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 -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・유지
 -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안전관리자

- 안전관리자의 등의 증원 · 교체임명 사유
 -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
 -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
 -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게 된 경우
 -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

노사협의체

- 설치 대상
 - 공사금액이 120억원(토목공사업은 150억원) 이상인 건설업
- 구성
 - 근로자위원
 - ❖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
 - ❖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
 - ❖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
 - 사용자위원
 - ❖해당 사업의 대표자
 - ❖ 안전관리자 1명
 - ❖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
- 운영
 -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2 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안전보건관리규정

• 개요

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·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 갖춰 두고,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• 내용

- 안전 ·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
- 안전・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-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-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안전 · 보건에 관한 사항

관리감독자의 업무

-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·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
 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-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 치의 점검과 그 착용·사용에 관한 교육·지도
-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 급조치
-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· 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 · 감독

안전보건총괄책임자

- 지정 대상사업
 -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(선박 및 보트 건조업,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) 이상인 사업 및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.

• 직무

-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
- 작업의 중지
-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조치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·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
-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

안전보건개선계획

- 계획의 수립
 -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·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.
 -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, 안전 · 보건관리체제, 안전 · 보건교육,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- 안전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·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
 - 사업주가 안전 ·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
 -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
 -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(상시 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 장의 경우 3명 이상) 발생한 사업장
 - 작업환경 불량, 화재·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 으키는 사업장

산업재해 발생건수,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 가능한 사업장

-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
- 사망만인율(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)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
-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
-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
-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

1.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 · 운영해야 할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다. () 안을 채우시오.

근로자위원	· (① ·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·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(②
사용자위원	 ・해당 사업의 (③) ・(④) 1명 ・(⑤) 1명 ・산업보건의 ・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부서의 장 (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외)

2.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과 회의록 작성사항에 대한 설명이다.() 안을 채우시오.

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사항	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사 항
 산업재해 (①)에 관한 사항 (②)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(③)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(④)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(⑤)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(⑥)에 관한 사항 	 · 개최 (⑦) · (⑧) 위원 · 심의 내용 및 (⑨) 사항 · 그 밖의 토의사항

3. 다음의 보기의 안전관리자 최소의 인원을 쓰시오.

[보기]

- ① 펄프 제조업 상시근로자 600명
- ② 고무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
- ③ 운수 · 통신업 상시근로자 500명
- ④ 건설업 상시근로자 500명

- 4.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·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내용이다. () 안을 채우시오.
 - ·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(①) 이상인 경우
 - · 중대재해가 연간 (②) 이상 발생한 경우
 - ·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(③)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- ·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(④) 이상 발생한 경우

- 5.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및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이다.() 안을 채우시오.
 - · 공사금액이 (①) (토목공사업은 (②)) 이상인 건설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·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·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(③)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- ·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(④)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6.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다. () 안을 채우시오.

근로자위원	·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·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(①) 1명 · 공사금액이 (②) 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
사용자위원	 해당 사업의 대표자 (③) 1명 공사금액이 (④)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

- 7.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자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. () 안을 채우시오.
 - · 안전 · 보건 (①) 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
 - · 안전 · 보건 (②)에 관한 사항
 - ·작업장(③)에 관한 사항
 - ·작업장(④)에 관한 사항
 - ·(⑤)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 - · 그 밖에 안전 · 보건에 관한 사항

- 8.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4가지 고르시오.
 - a 사업장 순회점검 · 지도 및 조치의 건의
 - ⑤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·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·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·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 - ⓒ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·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·지도
 - ④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·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그 착용 · 사용에 관한 교육 · 지도
 - e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 - ⑤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 - g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·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 - (h)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·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·감독
 - ①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· 유지

9.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에 대한 내용이다.() 안을 채우시오.

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은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(①)(②)건조업,(③)제조업 및(④)의 경우에는 50명)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 액이(⑤)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.

- 10.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대한 내용을 5가지 고르시오.
 - ⓐ 작업의 중지
 - ⓑ 안전·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 - ⓒ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조치
 - d)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 -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 -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·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
 - ③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·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·지도
 - (h)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
 - ①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
 -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
 - ₭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
- 11.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·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·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한 설명이다. () 안을 채우시오.
 - ·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 사업주가 안전 ·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(①)가 발생한 사업장
 - ·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(②)인 사업장
 - ·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(③) 이상(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(④) 이상) 발생한 사업장
 - · 작업환경 불량, 화재·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(⑤)를 일으킨 사업 장
 - ·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

- 12. 다음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건수,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. () 안을 채우시오.
 - ·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(①) 이상 발생한 사업장
 - ·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(②)인 사업장
 - ·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
 - ·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(③)한 사업장
 - ·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(④)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

Thank you